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18 발의연월일: 2025. 4. 7.

발 의 자: 송옥주・임미애・이병진

박해철 • 윤준병 • 이수진

어기구 • 문금주 • 김남희

김태년 • 박 정 • 이원택

의원(12인)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또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험가입자의 비판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재 해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 록 하는 등 현행법의 제도를 정비하여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업재해 중 병충해에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충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안 제2조의3 신설).
- 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제7항 신설).
- 마.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손해평가 검증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 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충해"를 "병충해(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충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 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1조의8에 따른 재평가 및 이의신청 현황
 - 2. 제26조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의 수집 ·관리 현황
 - 3.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신청 및 미지급(미지급 사유를 포함한다) 현황
 -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기후위기 전문위원회) 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 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정책 수립을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위원회(이하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1.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보험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와 관련된 사항
 - ③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그밖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험목적물"을 "기후위기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험목적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해당"을 "제2조의4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보험"을 "기후위기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해보험"으로 한다.

제1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실무교육 등"을 "실무교육, 제7항에 따른 검증조사 등"으로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 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일부와"를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재해보험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재해보험사업 운영 지원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2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 2. 제11조제7항에 따른 손해평가 및 제11조의8에 따른 재평가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	1
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	
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u>병충</u>	<u>병충</u>
<u>해</u> ・조수해(鳥獸害)・질병 또	해(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힐
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	로서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
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	는 병해충 등 농림축산식품부
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어	령으로 정하는 병충해를 포함
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한다)
	<u>.</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
	<u>식품부장관과</u>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
	<u>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u>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생 략)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한다.

- 1. 제11조의8에 따른 재평가 및 이의신청 현황
- 2. 제26조에 따라 수집 · 관리하 는 지역별, 재해별 통계자료 의 수집 • 관리 현황
- 3.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신 청 및 미지급(미지급 사유를 포함한다) 현황
-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 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 <u> 요한 사</u>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 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현행 제2조의3과 같음)

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 1. <u>제2조의3</u> 각 호의 사항 2. ~ 4. (생 략)
- ② ~ ⑧ (생 략) <신 설>

-----.

- 1. 제2조의4-----
- 2. ~ 4.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후위기 전문위원회)

- 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해보험정책수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위원회(이하 "기후위기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보험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에 관
 한 사항
- 2.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와 관련된 사항
- ③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원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② 정부는 <u>보험목적물</u>의 범위 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재해보 저 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u>대통령령으로 정</u>한다.

② 정부는 <u>재해보험</u>에서 보상 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위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밖에 기후위기 전문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②기후위기 전문위원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험목
적물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제2조의4에 따른 농업재해보
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정
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u> </u>
정한다.
<u> </u>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해보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⑥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정보의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
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손해평
가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실무교육, 제7항에 따른 검증
조사 등
제19조(재정지원) ①
100분의 8
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u> </u>
·,

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신 설></u> _____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

구기관을 재해보험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

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기관은 재해보험사업 운영 지 원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2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 2. 제11조제7항에 따른 손해평
 가 및 제11조의8에 따른 재평
 가・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검
 증조사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

- •관리 및 제공
-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관

 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